**“<자외선 흡수제 · 산란제> 및 <비타민 C>를 배합한 상품의 표시 기준”의 “2 <비타민 C>를 배합한 상품의 표시 기준”에서 “주) 13 전성분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”의 운용에 대해**

표기에 관한 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했으므로 고지합니다.

2006년 4월 13일

1. 기본적인 생각

주) 13 “전성분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”의 해석에 대해서는 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”를 제품의 안정제(항산화제 등)로 배합하여, 전성분 표시 중에 “비타민 C(표시 명칭 아스콜빈산) 및 그 유도체”의 성분명이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”의 배합목적을 설명하기 위해, 해당 배합목적을 병기한 경우에 한하여 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”의 성분명을 특별 기재하여 표시할 수 있다. 단, 그 경우,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.

1. 표시방법

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”를 제품의 안정제(항산화제 등)로서 배합한 화장품으로, 전체성분 표시 중에 “비타민 C(표시명칭 아스콜빈산) 및 그 유도체”의 성분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“비타민 C 및 그 유도체”의 성분명을 특별 기재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* + 1. “제품의” 문자를 붙인 후, 배합목적(제품의 안정제 ＜항산화제 등>)을 부기할 것
		2. 배합목적은 사실일 것
		3. 일반소비자에게 배합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말 것
		4. 강조 표시 · 캐치 표시를 하지 말 것
		5. 배합목적(제품의 항산화제 등)의 문자 크기는 “비타민C 및 그 유도체” 문자와 동등하게 할 것
		6. 배합량을 표시하지 말 것

주)1 ③의 구체적인 예로는 “미백효과”로 연결되는 것 같은 “촉촉한 흰 피부를 유지합니다”와 같은 미백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반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들 수 있다.

1. ④의 “강조표시 · 캐치(catch) 표시”란 “비타민C 및 그 유도체” 문자를 다른 문자에 비해 크게 하거나, 밑줄을 치거나 색상을 부여하거나 하여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상기 규정은 의약부외품(약용화장품)에도 준용한다.